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1.

김 천



1. 공고기간 : 2023. 12. 2. ~ 2023. 12. 16. (14일간)

2. 공시송달 및 내역

위반자	송달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김*수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로38번길 **5, 2층 *6호	복구설계서 미제출	250,000원	폐문부재
김*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5, 101동 ***6호	복구설계서 미제출	500,000원	폐문부재
(주)삼**업	경북 구미시 형곡로7길 **, 2층	복구설계서 미제출	2,750,000원	폐문부재

3. 안 내

가.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김천시 산림녹지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 :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지관리팀(☎054-420-6663)